

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06. 10. 25.

제안자 : 박재국의원 외

수정 이유

- 안 제2조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을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유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음.
- 이는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과 도비지원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고자 함.

수정 주요내용

-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의한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유치원으로 확대(안 제2조)

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교육지원사업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2조(지원대상) <u>교육지원사업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소재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(지원대상) <u>교육지원사업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.</u></p>